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51
----------	-------

발의연월일 : 2023. 7. 19.

발의자 : 이달곤 · 지성호 · 권성동

김예지 · 박대수 · 윤두현

김영선 · 양금희 · 윤영석

金炳旭 · 백종현 · 권명호

장기윤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과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위주로만 선정되고 있고,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이 다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평가 절차도 현행법상 부재한 상황으로, 민간에 대한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으나, 그 대상을 ‘항만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신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의제조항의 미비로 사업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 의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도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항만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대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2호 신설).

다.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

대책 사업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받으려는 자”를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신청인”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제1항 중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신항만건설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 31. (생략)

<신 설>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apart, intended for children to practice letter formation by writing letters between them.

2. ~ 31. (현행과 같음)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_____

<p>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을 준용한다.</p>